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 88호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다르게 정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가스충전시설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를 법령에서 정한 거리로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2. ~ 2017. 10. 16.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로 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에 2배의”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